11 환경

해양수산부 | 환경부



Main Institutions Infographic

1 환경부

사업장 허가 ·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

시행일: 2017년 1월

Before

신설



2 환경부

>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 시행

시행일: 2017년 1월

Before



After

3 환경부 폐기물수집·운반기준 강화시행

□ 시행일 : 2017년 1월

Before



After





해양수산부

1. 보호대상 해양생물 추가 지정

| 해양수산부 | 해양생태과 (☎ 044-200-5315)

보호대상 해양생물*이 77종으로 확대됩니다.

- *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, 우리바다에서 개체수가 급감 중이거나,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중 지정
- 상괭이 등 해양생물의 개체수 감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포유류, 어류, 무척추동물, 연안성·해양성 조류 등 해양생물 25종을 보호대상으로 추가(52→77종) 지정하였습니다.
 - 또한, 어업활동 등에 피해를 주는 갯줄풀, 영국갯끈풀을 유해해양생물로 추가 지정('16.9) 하였습니다.
- 앞으로도 법정관리해양생물(보호대상해양생물+유해해양생물)을 확대 지정하고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지 보호, 개체수 회복 사업과 유해해양생물의 제거사업을 지속 수행하겠습니다.

|참고| 해양수산부 홈페이지〉소식바다〉보도자료〉해수부, 보호대상해양생물 25종 추가 지정

보호대상해양생물 추가 지정

- 추진배경 고유종, 국제적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보호
- 10 110, MI 1 - MI 1 - 100 = - -

● 주요내용 ① 보호대상해양생물을 기존 52종에서 77종으로 확대 지정

- 해양포유류 1종, 어류 3종, 무척추동물 7종, 연안성·해양성 조류 14종을 신규로 지정
- ② 보호대상해양생물 대상 위반행위
 - 상업·레저 목적의 포획과 유통이 불가능하며,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. 단, 어업활동 중 불가피하게 혼획한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음
- 시행일 2017년 1월 1일



2. 울산연안 해역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

| 해양수산부 | 해양환경정책과 (☎ 044-200-5287)

2017년 상반기까지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에 카드뮴, 수은 등 중금속 물질의 배출 총량을 제한 하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.

- 현재. 오염이 심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5개 해역 중 마산만('08년), 시화호('13년), 부산 연안('15년)에 대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여,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역 유입량을 제어해 오고 있습니다.
- 2017년부터는 울산연안에 대해서도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며, 산업단지가 다수 위치하고 있는 울산연안 해역의 사회 지리적인 특수성을 반영하여 중금속을 총량관리 대상항목으로 최초 설정하여 배출총량을 할당 및 관리할 예정입니다.

[참고]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소식바다>보도자료>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기본계획 수립 시행

중금속 기반의 울사연안 오염총량관리 추진

• 추진배경 중금속 오염 등 해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오염총량관리

- 주요내용 ① 총량관리 대상해역 확대(마산만, 시화호, 부산연안 → '17년 울산연안 추가)
 - ② 총량관리 대상항목 확대
 - 중금속 관리대상 항목 설정 : Cd, Cu, Hg, As, Pb, Zn 등
 - 중금속 배출허용량 설정(배경농도를 고려한 배출부하량 할당 등)
- 시행일 2017년 6월(울산연안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시행)

해양수산부

3.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추진

| 해양수산부 | 항만기술안전과 (☎ 044-200-5951~2)

항만의 환경오염 수준을 체계적으로 실측하고 정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* 를 추진합니다.

- * (근거) 항만법 제22조의2,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·3, 해양수산부 시행규칙(고시)
- 이를 통해 항만구역 내 소음 및 대기오염 발생 현황을 실측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적으로 조사·분석 합니다.
- 소음 및 대기오염 유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항을 선정하고 3개년 실측 및 분석을 수행하여 중·장기 환경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추진

- 추진배경 항만의 대기질·소음의 환경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
- 주요내용 환경오염 발생이 예상되는 항만, 부두, 시설 및 지점을 선정하여 환경 실태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항만별 중·장기 환경관리방안 마련
- 추진경위 및계획 ·항만법 및 동법 시행령 내 추진근거 마련 : '15년 3월, 11월
 - ·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(시행규칙:고시) 제정: '16년 11월
 - · 환경실태조사 3개년 계획 수립 : '16년 12월
 - · 환경실태조사 추진 : '17년 3월~ '19년 12월
 - · 항만환경관리 중·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 '20년~



1. 사업장 허가·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

| 환경부 |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(☎ 044-201-6724)

인허가 절차는 간소화 하고,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특성의 변화를 반영한 최적의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.

-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(절차 통합) 복잡하게 얽혀있는 6개 법률의 시설별 10개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의 허가로 통합·간소화
 - (환경관리 최적화) 다양한 사업장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조건과 배출기준 부여, 효과적 환경보호 체계로 전환
 - (기술 기반) 오염배출은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도 높이는 환경관리기법을 조사하여 최적가용 기법 기준서 작성·제공
 - (워스톱 서비스) 허가의 신청부터 결정까지 통합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운영
 - (합리적 사후관리)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·보완하고,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자에 적합한 문제해결 방안 제시
- 환경영향이 큰 대형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업종별 연차적으로 시행되며,
 - 기존 사업장은 해당 업종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으면 됩니다.

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

 추진배경 기존 환경 매체별 복잡한 관리방식을 통합하고 기술 발전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방식으로 전환

• 주요내용 ① 6개 법률의 10개 환경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

- ②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부여
- ③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조사하여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·제공
- ④ 허가의 신청부터 결정까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으로 해결
- ⑤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·보완하고, 지도·점검도 통합적으로 실시 등
- 시행일 2017년 1월 1일*
 - * 대상 업종 : 전기업, 증기·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, 폐기물처리업 등 3개 업종(나머지 16개 업종은 연차적 시행 예정)

2.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

| 환경부 | 교통환경과 (☎ 044-201-6932)

2016.8.4 환경부-수도권 3개 지자체(서울, 인천, 경기도) 협약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(옹진군, 연천군, 가평군, 양평군 제외)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2017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될 계획입니다.

- 운행제한제도는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경유차 중 종합검사 미이행·불합격한 차량과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.
 - 지금까지 운행제한제도는 올림픽대로, 강변북로 등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으나, 2017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제한제도가 실시됩니다.
 - 운행제한 대상차량 단속을 위하여 현재 서울시내 13개 지점에서 46대의 단속카메라 설치·운영 중이며, '17년에는 19개 지점에 66대의 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·운영될 예정입니다.
 -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(최대 200만원까지 부과)

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• 추진배경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

• 주요내용 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 서울시 전지역으로 확대 적용

- ② 단속카메라 설치: 서울시 13개 지점(46대) → '17년 서울시 전역(32개 지점 (112대)) → '20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역(157개 지점)
- ③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(최대 200만원까지 부과)
- 시행일 2017년 1월 1일



3.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및 관리기준 도입

| 환경부 | 물환경정책과 (☎ 044-201-7014)

바닥분수, 물놀이형 놀이터 등 물에 들어가 놀 수 있는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*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없이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나.
 - * 수돗물,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·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, 연못, 폭포,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
- 2017.1월부터는 대상시설 신고가 의무화되고, 수질 및 관리기준이 적용되며,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토록 할 계획입니다.

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강화

- 추진배경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한 물놀이 시설 수질관리기준 도입 시급
- 대상시설 ① 국가·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·운영하는 시설(민간위탁 시설도 포함)
 - ② 민간에서 설치·운영하는 시설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, 관광지 및 관광단지, 도시공원, 체육시설,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
- 주요내용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('17.1.28부터)
 - ②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도입·적용
 - pH(5.8~8.6), 탁도(4NTU 이하), 대장균(200개체수/100mL 미만), 유리잔류염소(0.4~4.0mg/L), 수질검사(1회/15일)
 - 심 30cm 이하 유지, 부유물·침전물 제거 및 저류조 청소, 용수 여과 및 소독,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카드 작성·보관 등
 - ③ 수질 및 관리기준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
- 시행일 2017년 1월 28일 (기존시설의 경우 6개월 유예)

4.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

| 환경부 | 수질관리과 (☎ 044-201-7064)

2017년 1월 28일부터 산업단지·농공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.

- 지금까지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2년간 3회 위반한 시설만 기술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, 시설 노후로 인한 사고발생 및 수질환경 악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모든 시설이 5년 마다 기술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
- 2017년도 기술진단 의무 대상 시설은 65개로 기한은 연도말까지이며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- 참고로 기술진단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2에 따른 기술진단 전문기관(기술진단 전문기관이 위탁·운영중인 시설은 제외)만이 할 수 있으며, 비용은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비용고시(환경부 고시 제2013-143호)로 정하고 있습니다.

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

- 추진배경 시설 노후로 인한 사고발생 및 수질환경 악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술진단 도입
- 주요내용 ① 모든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
 - ② 기술진단 의무대상 시설이 기술진단을 정해진 기간내 하지 않은 경우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시행일 2017년 1월 28일



5. 조류(녹조) 피해예방 조치 호소에서 하천까지 확대

| 환경부 | 수질관리과 (☎ 044-201-7061)

조류(녹조) 발생으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의 대상을 기존 호소(호수 등 물이 가두어진 곳)에서 하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.

- 화경부 장관은 조류의 발생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소의 수면관리자나 취·정수시설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.
 - 화경부 장관이 명령 또는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댐이나 보의 비상방류, 조류제거, 취·정수시설 정수처리 강화 등이 있습니다.
- 지금까지는 호소의 수면관리자와 취·정수장 관리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. 앞으로는 하천과 호소를 포함한 모든 공공수역의 관리자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령 또는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.

|참고| 환경부 홈페이지〉법령/정책〉현행법령〉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(제21조의5)

조류 피해예방 不划

• 추진배경 조류 피해예방을 위해 호소 뿐 아니라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역에서 적극적인 조치 요청 필요

- 주요내용 ①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를 명령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함
 - ②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러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- 시행일 2017년 1월 28일

6. 국내 비점오염원, 법적 대책으로 체계적 관리 추진

| 환경부 | 수생태보전과 (☎ 044-201-7044)

국내 하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68%의 비중('10년, BOD기준)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관계부처,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비점오염 관리를 종합하여 연계·
 조정하는 법적근거가 없었으나,
 - 2017년부터 관계기관의 소관별 대책을 환경부가 종합하여 5년 마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환경부에서 관계기관의 이행실적을 매년 취합하여 평가하고, 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 강화· 보완을 요청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.

「참고」환경부 홈페이지〉보도·해명〉보도자료〉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

비점오염원 종합대책 수립 및 관리

• 추진배경 비점오염원의 저감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종합 관리 필요

주요내용 ① 종합대책 수립(5년마다)

- 관계기관 소관별(도시·농촌·산림 등),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 제출
- 환경부는 전문적·기술적 검토를 통해 종합대책 확정
- ② 이행실적 평가·보완
 - 관계기관의 소관별 대책의 이행 결과를 매년 환경부 장관에 제출
 - 환경부 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보완·강화하도록 요청
- 시행일 2017년 1월 28일



7. 공원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지원제도 마련

| 환경부 | 공원생태과 (☎ 044-201-7312)

자연공원의 경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·관리하기 위해 이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자연공원의 관리가 공원관리청 주도로 이루어져 왔고, 공원 구역 내에서 재산권 제한을 받는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
 - 2017년부터는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경관 보전·관리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 등을 지원하고, 이를 통해 공원관리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|참고| 환경부 홈페이지〉법령/정책〉현행법령〉자연공원법(제20조의2)

공원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지원제도 마련 • 추진배경 공원관리 효율성 제고 및 토지소유자 등 지원 필요성

• 주요내용 ① 토지 소유자 등과의 공원보호협약 체결

② 공원보호협약 체결 상대방에 대한 지원

시행일
 2017년 5월 30일

8. 폐기물 수집·운반 기준 강화 시행

| 환경부 | 폐자원관리과 (☎ 044-201-7370)

도심 미관을 해치고 각종 사고를 유발했던 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의 과다적재나 악취 누출 등의 문제점이 차량 선진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개선된다.

-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밀폐형 덮개 설치 등 관련 규정을 2014년 12월에 개정하여 2017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 - 생활폐기물, 음식물류 폐기물, 사업장폐기물 등은 2017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·운반해야 합니다.

2017년도 폐기물 수집·운반 기준 강화 • 추진배경 폐기물 수집·운반 시 폐기물 낙하 또는 악취 발생 방지 필요

• 주요내용 폐기물 종류별로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하여 수집·운반

• 시행일 2017년 1월



9.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 추가

| 환경부 | 수도정책과 (☎ 044-201-7120)

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하여 수돗물의 수질 및 위생수준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브롬산염은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('11년)되어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 등을 검사해 왔습니다.
 -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평가한 인체위해도가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 권고하는 허용 위해수준의 약 1/10로 나타나, 선제적으로 위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질기준으로 추가하였 습니다.
- 수도사업자는 브롬산염 수질기준이 새롭게 설정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5만톤/일 이상 정수장에 대하여 월 1회로 수질 검사를 강화하여야 하고, 2018년 부터는 모든 수도시설로 검사를 확대하여야 합니다.

 환경부 홈페이지 > 법령/정책 > 환경법령 > 최근 제·개정된법령 >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

 (2017.1.1 시행)

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 추가 • 추진배경 수돗물의 수질 및 위생수준을 강화

• 주요내용 ①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강화

② 2017년 1월1일부터 5만톤/일 이상 정수장부터 적용, 월1회 수질검사 시행

• 시행일 2017년 1월 1일(하루처리 용량 5만톤 이상 정수장)

※ 2018년 1월부터 모든 정수장 적용(마을상수도, 소규모급수시설, 전용상수도 등)